

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4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상위법인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위임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,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(안 제11조)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
“통합지원 사업”을 “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”
- (안 제14조) 및 조문 간 인용 오기 사항 개정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8월 6일까지(13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복지정책과(우 10932)

○ 연락처 : 031)940-3703/ 팩스 031)940-4399 / 이메일 ey4you2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 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